대입학교장추천제 규정

북일고등학교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입학교장추천입학심의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1) 본 규정은 대입 학교장추천입학제에 따른 본교 3학년 재학생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심의·선발하여 해당 대학이나 학과에 추천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본 규정은 대학입학전형제도에 따른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규정의 적용)

본 규정은 대입 학교장추천입학제에 관한 재학생의 선발 및 추천에 관한 심의.결정에 주로 적용된다.

제4조(기본 방침)

(1) 대학에서 추천입학에 대한 의뢰가 있을 경우 이를 3학년 전체 학생에게 홍보하여 해당자가 기회를 잃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2) 대학에서 특별히 정한 구체적인 추천 기준에 적합한 피추천 희망자 수가 대학이 요구하는 인원수 이내일 경우 전원 그대로 추천하며, 희망자 수가 대학이 요구하는 인원수 이상일 경우에는 대학에서 정한 추천 기준을 토대로 본교의 추천 기준을 작성하여 선정.추천한다.

(3) 대학에서 특별히 정한 구체적인 추천 기준이 없을 경우 피추천 희망자 중 본 추천 기준에 의거 산정한 순위에 의하여 선정.추천한다.

(4) 대학에서 요구하는 추천 기준이 특별한 기능이나 성적 우수자 순이나 학생회 회장 경험 등을 소유한 학생에 국한할 경우, 본 규정과 관계없이 해당 대학의 기준에 따라 추천한다.

(5) 희망자에 대한 심의.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대상자의 최소 학력 자격을 제시할 수도 있다.

(6)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간단한 지필고사와 면접을 실시할 수도 있다.

(7) 대학별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는 경우 졸업예정자를 졸업생보다 우선 선발한다.

제5조(해당학생의 서류제출)

해당대학의 학교장추천입학요강이 접수되면 3학년 담임은 학급 학생들에게 이를 공고하고, 모집 요강에 제시된 자격을 갖춘 학생 중 희망자의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서류는 대학 배정인원의 4-5배수에 해당되는 학생에 한하여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한다.

⑴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⑵ 담임 의견서(선택)

제6조(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는 학교장(위원장), 교감(부위원장), 진로진학지원부장(간사), 교무기획부장, 교수학습지원부장, 안전생활부장, 3학년부장,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의 개최)

학교장 추천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대학의 추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장추천입학심의위원회는 비정기적으로 심의회를 개최하여 적격자를 심의.결정하여 추천한다.

제8조(심의 대상 학생 선정 절차)

동 규정의 7조가 적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추천한다.

⑴ 피추천 희망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3학년 담임 회의에서 검토, 심사한 후 대학에서 결정한 학교별 배정 인원수의 4-5배수를 위원회에 상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동 위원회는 부위원장의 사회로 3학년 담임 회의에서 추천한 학생에 대하여 모집 요강에 해당되는 인원을 심의.결정한다.

⑶ 동 위원회는 추천된 학생이 지원한 대학의 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되는지를 고려하여 심의.결정한다.

⑷ 선발된 학생은 학교장의 최종 재가를 받는다.

⑸ 학교장의 재가를 받은 학생은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해당 대학의 학교장 추천 입학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 정리하여 접수시킨다.

제9조(추천 기준)

동위원회의 추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 각 대학의 입시요강에 의거하여 추천하되, 세부 기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⑵ 학교폭력관련 징계 및 학교 교칙을 위배하여 징계받은 학생은 추천에서 제외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개최와 심의 대상자 선발 방법)

동위원회의 구성과 추천 대상자 선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본 위원회의 개최는 전(全)위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6명 이상이 참석하면 본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으며, 그 결정사항은 효력을 발생한다. 단, 위원장(학교장) 부재 시 동위원회는 결정 사항에 대하여 추후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⑵ 해당 대학의 적격자 선발이나 기타 대입 학교장추천입학제에 수반되는 결정 사항은 동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심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시킬 수도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타활동)

동위원회는 해당 대학의 적격자를 심의·추천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활동도 할 수 있다.

⑴ 동 위원회가 해당 대학의 학교장 추천입학제에 대해 자격을 갖춘 학생.학부모에 대한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협의에 의해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대상자 선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반드시 공개한다.

(3) 선정 결과에 대해 설명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 간사인 진로진학부장이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위원장인 학교장은 재심의를 할 수 있다.

(4) (기타) 동위원회는 대입 학교장 추천입학에 따르는 본 규정 이외의 기타 사안에 대해서도 심의·결정할 수 있다.

부칙 ⑴ 본 규정의 효력은 2014년 3월 5일부터 발생한다.
⑵ 본 규정의 효력은 2014년 7월 18일부터 발생한다.
⑶ 본 규정의 효력은 2020년 4월 27일부터 발생한다.
⑷ 본 규정의 효력은 2023년 3월 27일부터 발생한다.
⑸ 본 규정의 효력은 2026년 4월 11일부터 발생한다.